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제233회 임시회 (2019. 9. 25.)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최국모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1. 제출경위

- 가. 의안번호: 19-113
- 나. 제 출 자: 마포구청장
- 다. 제출일자: 2019년 9월 9일(월)
- 라. 회부일자: 2019년 9월 10일(화)

2. 제출사유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 및 복지증진을 위해 개관 예정인 노동자종합지원센터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하고자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3항에 따라 마포구의회에 동의를 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민간위탁의 목적

- 1) 민간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통한 내실 있는 시설 운영으로 이용 근로자 만족도 제고
- 2) 운영과 시설관리의 일원화로 업무의 효율성 증대

나. 민간위탁의 내용

- 1) 위탁기간: 2019. 11. 1. ~ 2020. 10. 30. (1년)
- 2) 위탁운영 시설현황
 - 시설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 위 치: 마포구 매봉산로 18, 상암동(마포창업복지관 3층)
 - 면 적: 65m²

3) 위탁사무 범위

- 근로 법률상담 및 교육
- 근로자 복지사업, 취약계층 근로자 지원 프로그램 운영
- 근로여건 등 실태 파악, 일자리 사업 안내 및 취업 지원 사업
- 합리적이고 상생하는 노사관계를 위한 정책 및 사업 개발 등

4) 수탁기관 선정방법: 공개모집

5) 수탁기관 선정주체: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별도 구성)

다. 추진 일정

- 1) 공개모집 공고 : 2019. 10. 7.
- 2) 신청서 접수 : 2019. 10. 8. ~ 10. 18.
- 3) 선정 심사 : 2019. 10. 28. ~ 10. 31. (기간 중 1일)
- 4) 협약 체결 : 2019. 11월 중
- 5) 위탁 운영 : 2019. 11월 중 (위탁기간 1년)

※ 추진일정은 기관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라. 참고 사항

1) 관계 법령

- 「서울특별시 마포구 근로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4.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마포구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사업계획’에 의해 마포구 매봉산로 18 (상암동) 창업복지관내에 설치 예정인 동 시설의 민간위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 추진근거인 「서울특별시 마포구 근로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구청장은 근로복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적절한 능력을 갖춘 법인·단체에 근로복지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위 시설의 관리·운영을 노동분야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임.

- 제출된 민간위탁 동의안의 위탁사무의 범위를 살펴보면 중소 영세사업장 노동자, 비정규직 등 노동조합 결성이 어려운 취약계층 노동자에게 부당한 노동, 인권 침해 등에 대한 법률 지원, 노동자 교육 및 취업 지원, 합리적이고 상생하는 노사관계를 위한 정책 및 사업개발 등이며, 이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근로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것임.

참고로, 관내 36,504개 사업체 중 89.6%인 32,725개의 사업체가 10인 미만의 소규모, 영세 사업체임.

※ 취약계층 노동자란

근로복지기본법 제2조상 노동자로서 비정규직 노동자(기간제, 단시간, 파견노동자 등), 영세사업장 노동자, 건설노동자, 이주노동자, 장애인 노동자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노동자를 말함.

- 센터의 설치장소는 매봉산로 18 소재 상암동 마포창업복지관 3층이며 규모는 65㎡이고 사무실과 상담실 등을 설치할 예정임.
- 센터의 운영 조직으로는 센터장 1명, 팀장 1명, 팀원 2명 등 총 4명으로 되어 있고,
- 위탁기간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근로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2019년 11월 1일부터 2020년 10월 30일까지 1년으로 정함.
- 또한, 제출된 연간 위탁금액 산정 추계를 보면 소요예산은 359,000천원(인건비 140,500천원, 사업비 200,500천원, 운영비 18,000천원)이며 이 예산은 2019년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공모계획(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3844호, 2019.3.28.)에 따라 전액 시비로 충당됨.

- 본 동의안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효율적인 노동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동전문기관에 위탁함으로써 전문적 역량과 풍부한 경험 등을 활용한 양질의 노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직영운영 시 행정조직의 확대가 불가피하며 전문성 부족으로 서비스 질 향상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노동자 종합복지지원센터 운영의 민간위탁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 것임.
- 다만, 노동자 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는 경우 취약계층노동자의 특성 및 노동복지 욕구에 부합하는 수요자 중심의 시설이 되어야 할 것임.
또한, 이 시설의 설치 위치를 보건데 노동자의 이용상 편의성과 접근성 등 주변 환경을 고려한 선정 결과인지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아울러, 향후에도 이 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자원 중 사업비 및 인건비를 시 보조금으로 확보할 수 있는지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할 것임.

붙임: 관련 법령

【 관련 법령 】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나. 도서관·운동장·광장·체육관·박물관·공연장·미술관·음악당 등 공공교육·체육·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근로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근로복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적정한 능력을 갖춘 법인·단체에 근로복지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근로복지시설을 위탁한 경우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운영자”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협약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구청장은 수탁운영자의 운영실적 등을 평가하여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근로복지시설 관리·운영의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